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후조리도우미 아동학대시 직무배제 등〉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215호)
- 손 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327호)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80호)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616호)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30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814호)
-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2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제안경위	1
II. 검토의견	14
1. 산후조리도우미 아동학대 시 직무배제 의무화(이종욱의원안)	14
2.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지 허용 등(손솔의원안)	22
3. 산후조리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백혜련의원안) ..	43
4.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 추가(백혜련의원안) ...	52
5. 가임력 보전 목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확대 등(김민전의원안) ...	59
6. 산후조리업 폐업 시 이용자 보호 등(윤준병의원안)	63
7. 취약임산부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이주영의원안)	73

I. 제안경위

1.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21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종욱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3. 04.
- (3) 회 부 일 : 2026. 03. 0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아동을 학대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 경우 산후조리도우미가 다른 가정 배치되어 아동학대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정부 지원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

려도 있음.

이에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0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손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32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손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3. 09.
- (3) 회 부 일 : 2026. 03.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의 용어로 정비하고,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모자보건법」 상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용어인 ‘인공임신중지’로 변

경하며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의 방법을 포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78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3. 26.

(3) 회 부 일 : 2026. 03.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저리의 대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후조리원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했던 분유,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 등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산모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

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3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4.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61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4. 24.

(3) 회 부 일 : 2026. 04.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산후조리원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5.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03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5. 20.

(3) 회 부 일 : 2026. 05.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극복 지원 대상인 난임 부부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인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연령이 낮아 생식세포의 가임력이 높을 때에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하였다가 향후 출산을 원할 때 이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위한 지원 여부

와 내용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른 생식권의 불평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생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생식권 보장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제1항).

6.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81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07. 08.
-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폐업·휴업 사실의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반환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부재함.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용예정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휴업에 들어가면서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산모들이 대체 시설을 찾

지 못하거나 미리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출생아 수 저조 및 민간 산후조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하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반환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0 신설 등).

7.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02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주영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07. 16.
-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험 임신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건강상의 고위험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 · 경제적 여건 · 언어 장벽 · 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 · 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신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하에서 근거 법령의 산재는 취약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신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 · 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7 신설).

II. 검토의견

1. 산후조리도우미 아동학대 시 직무배제 의무화(이종욱의원안)

-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수사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무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0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0(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의무)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산후조리도우미의 직무 배제 사실과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u> <u>②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u>

		<u>에 따라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수사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후조리도우미에게 직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제15조의20</u> (산후조리원 평가) (생략)	평	<u>제15조의21</u> (산후조리원 평가) (현행 제15조의20과 같음)
<u>제15조의21</u> (산후조리 실태조사) (생략)	관련	<u>제15조의22</u>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현행 제15조의21과 같음)
<u>제15조의22</u> (모자동실 운영) (생략)	운영)	<u>제15조의23</u> (모자동실 운영) (현행 제15조의22와 같음)

□ 산후조리도우미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말함(법 제15조의18).

○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속되어야 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나아가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음(법 제15조의19).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①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라 한다)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위 규정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란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②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법률	내용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산후조리도우미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총 3만 2,942명의 산후조리도우미가 1,227개소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고 이용자는 17만 6,344명임.

<산후조리도우미 관련 통계>

(단위: 명, 개소)

시도	제공기관	제공인력(산후조리도우미)	이용자
합계(중복제거)	1,227	32,942	176,344
서울특별시	886	9,336	34,539
부산광역시	198	2,262	10,417
대구광역시	117	1,630	8,285
인천광역시	362	2,549	10,286
대전광역시	188	1,406	5,321
광주광역시	80	868	3,667
울산광역시	99	838	4,186

시도	제공기관	제공인력(산후조리도우미)	이용자
경기도	914	11,287	50,968
강원특별자치도	197	940	3,903
충청북도	223	1,145	4,975
충청남도	259	1,610	6,467
경상북도	219	2,159	8,540
경상남도	241	2,307	10,745
전라남도	176	1,474	5,541
전북특별자치도	139	1,015	4,587
제주특별자치도	67	385	1,808
세종특별자치시	118	612	2,114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나아가 같은 취지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8)을 함께 개정해야 할 법률안으로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회서비스 제공자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 27. (생략) <u><신설></u> ③ · ④ (생략)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27. (현행과 같음) 28.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와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 ③ · ④ (현행과 같음)

□ 다만,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요건인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됨 (같은 법 제10조제1항)²⁾.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는 조사나 수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행위인 반면,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효과가 더 큰 측면이 있음.
- 나아가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인지와 의심 정도를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바, 허위 신고의 가능성 등 동 규정이 남용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기관 등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여부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 또는 아동전담공무원의 초기 조사·판단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임.

기관	의견
보건 복지부	□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08호)이 의결되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까지 직무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아동학대범죄 여부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 또는 아동전담공무원의 초기 조사·판단에 따르는 것이 합당함

2.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지 허용 등(손술의원안)

가. 약물 투여 등에 의한 인공임신중지 허용

-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명칭을 인공임신중지로 수정하고 수술 이외에 약물 투여 등의 방법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 <u>인공임신중절수술</u> ”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7. “ <u>인공임신중지</u> ”란 수술이 나 약물 투여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중 지하는 행위를-----.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12조(<u>인공임신중절</u> 예방 등의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u>인공임신중절</u> 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	제12조(<u>인공임신중지</u> 예방 등의 사업) ① ----- ----- ----- ----- <u>인공임신 중지</u> -----

할 수 있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안 제2조제7호는 수술 외에 ‘약물’을 통하여도 임신을 종결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확대하면서 이를 “인공 임신중절수술”에서 “인공임신중지”로 수정하려는 것임.

○ 해당 목적의 약품은 198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았고, 2005년 WHO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등재되었으며, 프랑스 및 일본 등 약 100여개 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 중임³⁾.

<주요국 인공임신중절 약물 허가제품 현황>

제품명	성분(제조원)	효능·효과	용법·용량
미프진 (Mifegyne)	mifepristone [Exelgyn, 프랑스]	1. 자궁내 임신의 의학적 종료 (임신후 63일까지) 2. 자궁 확장 3. 사산시 분만유도	mifegyne 200mg과 gemeprost 1mg
미페프렉스 (Mifeprex)	mifepristone [Danco laboratories, 미국]	임신 70일까지 자궁내 임신의 의학적 종료	mifeprex 200mg과 misoprostol 800mg
메다본 (복합포장)	mifepristone 200mg misoprostol 4*0.2mg [Ranbaxy, 영국]	임신 63일까지 자궁내 임신의 의학적 종료	mifeprex 200mg과 misoprostol 800mg

자료 : 보건복지부

3) 약물적 인공임신중절은 일반적으로 ① 미페프리스톤(제품명: 미프진) 투약 이후 1~2일 이후 ② 미소프로스톨 투약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자연유산과 유사하게 자궁통증 또는 생리혈 출혈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평균 9일, 최대 45일)
- (과정) ① 착상된 수정체 분리(미페프리스톤) → ② 자궁수축·수정체 배출 유도(미소프로스톨)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관련 정책용어를 정비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⁴⁾하였는데 개정안은 이를 수용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임신중절’은 현행법의 정의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임신중지’에 대하여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존에 의학적·법률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변경할 실익이 의문이라는 견해 역시 제기되고 있음⁵⁾.

나.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

- 개정안은 임신·출산 등에 관한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상담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업무·지정취소 및 상담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7조의2(중앙상담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4) 23진정0752100 (2024. 9. 25.)
 5) 대한의사협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견임.

단체 또는 기관을 중앙상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상담기관의 지원

2. 임신·출산 등 상담 전문
가의 교육 및 양성

3. 그 밖에 임신·출산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
은 중앙상담기관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앙상
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
게 된 경우

<신 설>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중앙상담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제7조의3(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
합적인 정보 제공

2.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3. 임신의 유지·중지에 관한
상담

4.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임신·출산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④ 그 밖에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상담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의2에 따른 중앙상담기관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법률 제2110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관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청문) <u>보건복지부장관</u>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u>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법률 제2110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 ----- ----- ----- ----- ----- -----<u>시·도지사</u>를----- -----. 제11조의5(청문) <u>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 1. <u>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기관의 지정을 취소</u>
--	--

<u><신 설></u> <u><신 설></u> 법률 제2110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4. ~ 9.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 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u>하려는 경우</u> 2.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 역상담기관의 지정을 취소 <u>하려는 경우</u> 3.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 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 <u>하려는 경우</u> 법률 제2110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중 앙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자 의 중앙상담기관 운영비 5.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지 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자 의 지역상담기관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6. ~ 11. (현행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 -----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	---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 의 경비를 보조한다.	----- -----.
-------------------------------	-----------------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상담기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변경지정·지정취소,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운영비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앙상담기관의 업무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원, 임신·출산 등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등이고 지역상담기관의 업무는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임신의 유지·중지에 관한 상담 등임.

<양 기관의 설치·운영 주체 및 업무 비교>

구분	중앙상담기관	지역상담기관
지정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지정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업무	1. 지역상담기관의 지원 2. 임신·출산 등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3. 그 밖에 임신·출산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2.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3. 임신의 유지·중지에 관한 상담 4.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임신·출산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중앙상담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상담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을 중앙 또는 지역상담기관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중앙상담기관으로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⁶⁾나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⁷⁾ 등이 논의될 수 있고, 지역상담기관으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지회(13개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16개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가족센터(성평등가족부, 221개소), 해바라기센터(성평등가족부, 40개소)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중앙상담기관이 지역상담기관을 ‘지원’한다고 규정(안 제7조의2제1항제1호)하고 있는데, 양 기관의 법적 관계와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기관 간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 협력의 범위 및 방식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모자보건법」

제16조(협회)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국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중앙이나 지역에 상담기관을 두는 유사 입법례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

○ 동 제도는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관한 상담까지 명시하는 개정안의 상담기관과 업무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담인력 양성, 심리적 지원,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등은 기존 위기임산부 지원체계와 일부 중첩될 수 있으므로 기존 기관의 기능 확대 가능성, 기관 간 의뢰·연계체계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명칭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업무	1.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내용의 개발·보급 2. 지역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교육 3.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4. 위기임산부 온라인·모바일 상담 5. 지역상담기관 관리·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4.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다. 인공임신중지의 허용한계 등

-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규정한 제14조와 해당 수술 시 「형법」상 낙태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28조를 각각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8조 삭제).

현 행	개 정 안
<u>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u> <u>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u> <u>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u> <u>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u>	<u><삭 제></u>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
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
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
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
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
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
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
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
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
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
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
는 「형법」 제269조제1항·
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삭 제>

□ 안 제14조는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 24주일 이내에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한계 사항 등도 삭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모자보건법령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규정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u>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u> 3. <u>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u> 4. <u>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u> 5. <u>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u>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u>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u>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u>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u>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u>전염성 질환은 풍진, 독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u>

□ 안 제14조는 「형법」상의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2019.4.11.) 결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제1항8)(이하 ‘자기낙태죄’라 함)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제1항9)(‘의사’에 관한 부분¹⁰⁾, 이하 ‘의사낙태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17헌바127, 헌법불합치의견 4인, 단 순위헌의견 3인, 합헌의견 2인).

8)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10) 본 건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형태로 청구되었고,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심판을 청구하는 형태임. 본 건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업무상동의낙태죄로 기소되어 심판대상 조문을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으로 특정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음.

< 낙태죄 관련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문 일부 >

□ 결정요지

가.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중략)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자기낙태죄 조항과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입법자는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헌법재판소가 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함이 타당하다.

나.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의견이 3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4인이므로, 단순위헌의견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되,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

□ 재판관 3인의 단순위헌의견

헌법불합치의견이 지적하는 기간과 상황에서의 낙태까지도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다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른바 '임신 제1삼분기(first trimester, 대략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의사낙태죄 조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의견과 견해를 달리 한다.

□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입법목적은 매우 중대하고,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덜 제한하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을 동등하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이처럼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상의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규정은 2026년 9월 현재까지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낙태죄의 존재를 전제할 때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의미를 가지는 「모자보건법」 제14조11)와

11)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¹²⁾는 개정안과 같이 삭제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향후 「형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제28조의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음.

한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낙태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존재함.

□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3진정0752100 임신중지 권리 미보장으로 인한 인권침해’ (2024. 9. 25.) 결정문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임신중지 법적 자유화에 따른 유형은 총 203개 국가 중에서 극단적 불허 국가가 24개국, 임신한 여성만 최종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 국가가 73개국 등으로 나타남.

<임신중지 법적 자유화에 따른 유형>

유형	허용사유	국가 수
제1유형	극단적 불허	24개국
제2유형	임신한 여성의 생명 위협	42개국
제3유형	임신한 여성의 건강	51개국
제4유형	사실상 모든 사유 (단, 2,3,4유형은 의사 혹은 전문가의 증명 혹은 승인 필요)	13개국
제5유형	임신한 여성만 최종결정 내릴 권리 (임신 주수를 제한하는 경우/제한하지 않는 경우)	73개국

12) 「모자보건법」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인용하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¹³⁾의 정비 필요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모자보건법」 제14조 인용 법률 〉

제명	내용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임신 전 기간에 걸쳐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대한의사협회나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임.

13) 2026. 9. 18. 시행 예정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형법의 자기낙태죄 및 의사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임신 초 기간에 걸쳐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 고려 필요
대한 의사협회	☐ 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의 주요 명분 중 하나는 불법적인 자가 투여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것임. 하지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오히려 약물 오남용 및 합병증으로 인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등의 기관에서도 심리상담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기관들과 중복 행정이 우려됨. ☐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삭제는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함. ☐ 의료인도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경우 의료법상의 진료거부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개원의사회	☐ 인공임신중지로의 용어 변경 필요성 없어 반대 ☐ 임신중절 약물 자체의 위험성, 약물남용 가능성으로 인해 약물 투여에 의한 임신중절 허용 반대 ☐ 중앙 및 지역 상담기관 신설 또한 그 효용성과 상담기간 동안의 임신중절 시기 지연, 자원 및 인력 충당으로 인한 국고 손실 등을 사유로 반대

3. 산후조리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백혜련의원안)

-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가 물품 공급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및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3, 제26조 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5조의2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산후조리원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 ----- ----- -----.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③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의23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받게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하고,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함(법 제2조제10호).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15조).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산후조리업자는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기록부 구비 및 임신부·영유아 건강 상태 기록·관리, 소독 등 환경관리 등을 지켜야 함(법 제 15조의4).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나. 임신부·영유아의 건강관리 다.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3. 임신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신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음(법 제15조의7).

「모자보건법」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법 제15조의17제1항). 나아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법 제15조의17제2항).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6년 6월 30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은 총 480개로, 그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29개, 민간산후조리원은 451개임.

○ 입실율은 공공산후조리원이 69.1%, 민간산후조리원이 55.9%이고,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9.5명, 민간산후조리원이 13.4명임.

○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은 공공산후조리원이 170만원, 민간산후조리원이 343만원임.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개소수, %, 만원, 명)

개소수			입실율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	
총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480	29	451	69.1	55.9	9.5	13.4	170	343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산후조리원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산부인과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에 약 4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이 실제 얻은 경제상 이익은 약 17억 4천 6백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한 A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여 원을 부과하였음.

□ 나아가 2021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B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400만원을 부과하고,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C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였음.

□ 반면, 「모자보건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는 산후조리업자·종사자의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수수행위 자체를 일반적으로 금지·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제49조) 및 과징금(제50조) 부과 가능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광고의 기준)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3.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 위반시 시정명령(제14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1조) 등 대상	

□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후조리원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했던 분유, 일회용 기저귀, 목욕품 등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 참고로 개정안 중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문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규정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는 문구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u>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u>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u>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u>

□ 다만,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이는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어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의 유사성 정도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서의 리베이트 쌍벌제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었음.

○ 참고로 불법 리베이트란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의료기기업체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또는 수수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제외)을 말함.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②·③ 에도 유사 취지 규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2015년 헌법재판소는 위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로는 ① 의약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산품에 비해 공공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점, ②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제비 인상을 방지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기여, ③ 환자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점 등이 있었음¹⁴⁾.

□ 반면, 산후조리원에 사용되는 물품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제품이고, 시장질서의 왜곡이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와는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보건복지부는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의 규정 여부 및 인정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4)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5헌바70 결정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기준

4.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 추가(백혜련 의원안)

-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6호 및 제7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5조의2(결격사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 -----포함 한다. 이하 같다-----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신설>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u><신 설></u> 6. (생 략)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법인	<u>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현행 제6호와 같음) 9. -----제8호 ----- -----
--	--

☐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함(법 제2조제10호).

☐ 2025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총 47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
후조리업자는 536명, 종사자는 1만 632명이 있음.

<산후조리원 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1	'22	'23	'24	'25
계	501	486	469	470	472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산후조리업자 현황>

(2025. 12.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간호 조무사	일반인	법인
인원	536	102	59	5	0	43	138	189
비율	100	19	11	1	0	8	26	35

주: 공동대표자가 다수인 경우가 있어 산후조리업자 수가 산후조리원 개소수보다 많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현황>

(2025. 12.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기타
인원	10,632	2,125	5,627	98	2,782
비율	100	20	53	1	26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주: 기타는 미화원, 세탁원, 행정원, 취사부, 마사지사 등이며, 위탁·휴업 인력은 제외함

- ☐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법 제15조제1항),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자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5조의2).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¹⁵⁾. 개정안이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열거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 전과를 추가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범죄 경력자의 관련 분야 진입을 억제하여 산후조리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19가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산후조리업무의 특성, 개별 범죄의 성격,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한편, 개정안은 법인에 관한 결격사유를 제7호에서 제9호로 옮기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인 법 제15조의9제2항제2호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모자보건법」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체계상 정합성, 범죄유형별 특성 및 산후조리원 업무 관련성,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임.

5. 가임력 보전 목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확대 등(김민전 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 여부에 따라 지원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

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1조의7제1항).

□ 동 규정은 2024년 1월 23일 신설되어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절제 등으로 생식기능의 손상이 예상되는 사람이 치료에 앞서 생식세포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임.

□ 보건복지부는 위 규정에 따라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서울 30%, 그 외 50%)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액은 5억 8,200만원임.

○ 본인부담금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는데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원, 남성의 경우 최대 30만원이 생애 1회 지원됨.

○ 참고로 생식세포 동결·보존 기술 및 보관은 현재 비급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병원 간 편차가 큰데, 통상적으로 난자 채취 및 동결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자채취 및 동결은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소요됨¹⁶⁾.

□ 개정안은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대상을 현행 ‘영구적인 불임 예상’에서 ‘가임력 보전’으로 넓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장래의 임신·출산에 관한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¹⁶⁾ 가능여부 등 확인 위한 사전검사 비용, 생식세포 채취를 위한 비용(여성의 경우, 과배란 주사 등 약제비, 채취비, 초음파검사 등), 동결보관료 포함 금액

개정안도 제안이유에서 입법 목적을 국민의 생식권 보장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이 실제로 저출생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결한 난자를 해동하여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수요 부족으로 폐지된 사례가 있고 국내 임신 시도율은 약 5% 내외로 추정된다고 함. 따라서 동결된 생식세포가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나아가 가임력 보전 수단이 마련됨으로써 임신·출산의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고령 임신에 따르는 의학적 위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출산 지연효과와 고령·고위험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정적 효과 우려, 장기적으로 생식세포의 보관과 데이터의 사후관리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국가 지원으로 동결된 난자가 실질적 출산 이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보조생식 시술(해동 후 체외수정) 시행 시에 시술비(본인부담금)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기도는 가임력 보전 목적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대상자와 지자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중복되어 지원 기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울산시는 국가 차원의 지원범위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생식세포를 동결한 남·녀에 대한 실제 사용률과 임신율 등 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체계 구축과 같은 정책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 □ 사회적·자발적 생식세포 동결·보존은 개인의 재생산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출산 지연효과와 고령·고위험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정적 효과 우려, 장기적으로 생식세포의 보관과 데이터의 사후관리 문제 등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법제화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 필요 : 신중 검토
대한산부인과 학회	□ 국가 지원으로 동결된 난자가 향후 실질적 출산 이행(Take-Home Baby)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보조생식 시술(해동 후 체외수정) 시행 시에, 시술비(본인부담금)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 제안 □ 동결보존 생식세포의 안정적 보존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관리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공공 생식세포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며, 데이터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함
경기	□ 가임력 보전 목적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자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중복되어 지원 기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
울산	□ 개정안은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가임력 보전 수요까지 확대 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범위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현재 난임부부 지원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른 미혼남녀의 가임력 보존까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또한 생식세포 보관이 임신·출산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음

6. 산후조리업 폐업 시 이용자 보호 등(윤준병의원안)

-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이용요금 반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0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10호, 제2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 · 휴업 및 재개의 신고) (생략)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 · 휴업 및 재개의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휴업 사실의 고지, 이용요금(계약금·선불금을 포함한다) 중 미이용분의 반환,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u>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설></u>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 ① (생략)	제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제15조의10</u>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u><신 설></u> 4. ~ 6.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u>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u>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생략)	3. <u>제15조의10제1항</u>----- ----- ----- 3의2. <u>제15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u> 4. ~ 6. (현행과 같음) ③ ----- ----- -----. 1. <u>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3호의2·제4호·제5호</u>----- ----- -----. 2. (현행과 같음)
--	--

□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하고,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함(법 제2조제10호).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u>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u>”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u>산후조리원</u>”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법 제15조의17제1항).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u>공공산후조리원</u>”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6년 6월 30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은 총 480개로, 그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29개, 민간산후조리원은 451개임.
- 입실율은 공공산후조리원이 69.1%, 민간산후조리원이 55.9%이고,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9.5명, 민간산후조리원이 13.4명임.
-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은 공공산후조리원이 170만원, 민간산후조리원이 343만원임.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개소수, %, 만원, 명)

개소수			입실율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	
총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480	29	451	69.1	55.9	9.5	13.4	170	343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한편,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법 제15조의10).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현행법에는 폐업·휴업시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폐업 직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제18조의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의3(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 한다.

□ 나아가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반환기준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3에 따라 마련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이 참고되고 있는데, 표준약관 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해지 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 및 이용요금을 환급해야 함.

○ 입실 전 계약 해제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고, 입실 후 계약 해지는 총 이용요금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의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의 연도별·지역별 폐업 및 휴업 현황을 살펴보면, 산후조리원의 폐업 및 휴업 건수는 202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6월까지 4개소가 폐업, 3개소가 휴업하였음.

< 산후조리원 폐업 및 휴업 현황 >

연도	폐업	휴업
2022	12개소 (서울5, 강원1, 충남1, 경북2, 경남3)	11개소 (서울3, 부산2, 대전1, 경기3, 경북2)
2023	20개소 (서울4, 부산1, 대구2, 인천2, 대전2, 울산1, 경기3, 충북1, 충남1, 경북1, 경남1, 제주1)	13개소 (서울5, 경기5, 충북1, 전북1, 경북1)
2024	6개소 (부산3, 강원1, 전북1, 경남1)	6개소 (경기4, 충북1, 경북1)
2025	4개소 (서울1, 경기2, 제주1)	3개소 (서울2, 전남1)
2026. 6	4개소 (대전1, 경기2, 충남1)	3개소 (서울1, 경기1, 전남1)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하는 경우 이용요금의 반환과 이용 중인 임산부·영유아의 보호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행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와 돌봄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위 이용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2주 기준 300만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제재수단인지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개정안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 인구감소지역 현황과 그 중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된 지역 및 개소수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으로는 총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 산후조리원은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인구감소지역 현황 >

지역	지자체수	인구감소지역(산후조리원 수)	
서울	25	-	-
부산	16	3(2)	서구(1), 동구(1), 영도구
대구	9	3(1)	서구(1), 남구, 군위군
인천	10	2	강화군, 옹진군
광주	5	-	-
대전	5	-	-
울산	5	-	-
세종	1	-	-
경기	31	2	가평군, 양평군
강원	18	12(6)	고성군, 삼척시(1), 양구군(1), 양양군(1),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1), 태백시(1),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1), 횡성군
충북	11	6(1)	제천시(1),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충남	15	9(1)	논산시(1),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4	10(1)	고창군, 남원시(1),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전남	22	16(3)	강진군(1),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1),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1)
경북	22	15(4)	안동시(1),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1),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1), 울릉군, 울진군(1),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8	1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1),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2	-	-
합계	229	89(20)	

주: 음영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표시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이용료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보조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국가의 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안 제21조제1항제 10호를 신설하면서 지방비 분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함.

○ 참고로 김도읍의원이 2026년 7월 10일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법 제21조제1항에 공공산후조리원 경비보조를 신설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을 함께 개정하여 지방비 분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219893) >

현 행	개 정 안(김도읍의원안, 2219893)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9. (생략) <u><신설></u>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u>보조한다</u> .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비</u> ② ----- ----- ----- <u>보조하고, 제10호의 경비(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u>

□ 나아가 개정안이 인용한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38호로 개

정되어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인용 법률과 관련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하위법령 규정으로도 개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서울특별시에는 모든 폐업·휴업 신고 건에 대해 확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문구는 그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임.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현행 모자보건법 하위법령 규정으로도 개정안이 추구하는 실익을 보장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 발의 이전부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의3(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를 개정 추진 중 * 입법예고('26.6.9.~7.20.), 규제심사·법제처 심의(8~9월), '26.10월 시행예정 □ 한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은 지방사무로, 국비 지원 여부는 신중 검토 필요
서울특별시	□ 모든 폐업·휴업 신고 건에 대해 확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특정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지역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수요와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 산후조리원 협회	□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시 이용자 및 이용예정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 요금 중 미이용분에 대한 반환은 당연한 내용으로 대다수의 산후조리원이 이를 시행하고 있음. □ 다만,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문구는 그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음. 해당 문구는 삭제하거나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 해제 시 사업자의 의무 조치’ 등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취약임산부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이주영의원안)

- 개정안은 장애·빈곤·다문화 등 사회·환경적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취약임산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u> <u>가. 장애인인 임산부</u> <u>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임산부</u> <u>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u>

<신 설>

인 임신부

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
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

마. 그 밖에 건강관리를 위하
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임신부

제10조의7(취약임산부에 대한 지
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및 그 자녀인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취약임산부 조기발굴 및 지속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관리체계
구축
2.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3. 장애·빈곤·국적·지역 등 신
체적·사회적·경제적 취약요인
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취약임산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보건복지
부령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지원

□ 현행법은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일반적인 건강관리 근거를 법 제10조에 규정하고, 그 외에 특정 사유가 있는 임신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개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장비 지원(제10조의2), 다태아 임신부 지원(제10조의4), 산전·산후우울증 지원(제10조의5) 등이 있음.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10조의2(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신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4(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신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3.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개정안은 장애인인 임신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임신부, 결혼이민자 또는 청소년인 임신

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을 “취약임산부”로 정의하고 있는바 각 제도에서 규정하는 적용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 개정안 적용 대상 >

각 목	내용	관련 법률 조문
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④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자등 또는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서 생략)
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에 거주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1.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u>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u>할 수 있다.

□ 개정안은 현행 모자보건 지원이 의학적 위험 또는 개별 사업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소득·언어·연령·지역 등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지원이 필요한 임산부의 다양한 상담·의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임산부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임산부 지원 제도로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출산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산모 신생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있음.

□ 법제적으로는 “취약임산부”를 개정안과 같이 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의란 해당 법률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나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임¹⁷⁾.

17)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244.

○ 그런데 개정안에서 “취약임산부”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조문은 개정안 제10조의7 하나밖에 없음. 나아가 현행법은 개정안과 같이 특별한 보호의 사유가 있는 임산부¹⁸⁾를 정의규정에 두지 아니하고 본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취약계층 및 위기 가구 대상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중복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취약요인에 ‘심리적 요인’을 추가하여 취약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8) 고위험 임산부(제10조의2), 다태아 임산부(제10조의4), 산전·산후우울증 임산부(제10조의5)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현재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대상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중복 문제 검토 필요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기반한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및 지원 연계체계, “드림스타트 사업”의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등 - 모자보건사업 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고위험군 임산부 관리와 사례관리 참석,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수행 중 □ 또한, 보건소는 '건강·의료 서비스' 기관이나, 개정안에 따른 경우 취약임산부 대상 별도의 사례관리와 사회·경제적 지원(복지 서비스)까지 직접 연계·총괄하게 될 경우 보건소 내 전달체계의 개편과 업무가중도 검토할 필요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제10조의7제3호의 취약요인에 '심리적 요인'을 추가하여 취약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

문 의 처

02)6788-5500